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손해배상청구권 압류 등 금지〉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189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손해배상청구권 압류 등 금지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2025년 4월 28일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손해배상청구권 압류 등 금지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권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의2 신설), 손해배상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5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u> <u>① 제30조제11항 및 제33조제1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u>

<신 설>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30조 제11항 및 제33조제1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 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

현행법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¹⁾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기술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임시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특례사업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재 양도·압류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²⁾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상 규제특례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책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권고가 제시된 바 있음.

이에 법제처 주도로 규제샌드박스 법률 8개 중 6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동 개정안은 그 일환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또는 압류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기술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생략)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개정안은 피해자의 치료나 요양에 필요한 실제 손해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치료 등을 위해 지급될 필요성이 강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권에 한정하여 양도·압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인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국세청은 동 개정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³⁾에 따라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⁴⁾에 따라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조세채권금액을 한도로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다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3)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금전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4)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로 압류할 수 있도록 안 제45조의3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1 : 규제샌드박스 관련 전 부처 정비대상 법률(자료 : 환경부)

연 번	법 률	소 관 부 처	조 문	규 정 내 용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제23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23조의3	압류 등의 금지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제53조의4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53조의5	압류 등의 금지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제69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69조의3	압류 등의 금지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제39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39조의3	압류 등의 금지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제140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140조의3	압류 등의 금지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제45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45조의3	압류 등의 금지

※ 참고자료 2 : 인적손해 압류금지에 대한 유사 입법례(자료 : 환경부)

□ “청구원 행사로 전용계좌에 지급된 금원”에 대한 압류금지

○ (판례) 대법원 2018. 12. 12. 선고 2008마1774 판결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입법례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입법례2)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9조(수급권 보호) 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 “인적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

○ (판결례) 대법원 2018. 12. 17. 선고 2015다50286 판결례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 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입법례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입법례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